



제426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설치·운영〉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77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31.

3. 회부연월일 : 2025.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교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만 규정되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산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8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u>1.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u> <u>2.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u> <u>3.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u> <u>4. 제8조에 따른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u> <u>5.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 과반 이상의 위원이 사전에 동의하는 안건</u> <u>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u>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

나. 각 시·도교육청별 부교육감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1명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행정,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교육행정,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 1명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¹⁾.

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이 각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한 재정수요에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며,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 특별교부금은 ①국가시책, ②지역현안, ③재난안전관리, ④디지털 교육혁신 등의 사업 유형별로 교부하고 있고²⁾, 교부금 종류별 교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종류		교부기준	한시적(2024~2026)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u>97%</u> + 교육세 일부*	내국세의 20.79% 중 <u>96.2%</u> + 교육세 일부*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u>3%</u>	내국세의 20.79% 중 <u>3.8%</u>
	국가시책	3%의 60%	3%의 60% (180/380 ÷ 47.4%)
	지역현안	3%의 30%	3%의 30% (90/380 ÷ 23.7%)
	재난안전관리	3%의 10%	3%의 10% (30/380 ÷ 7.9%)
	디지털교육혁신	<u><신설></u>	<u>0.8%의 100% (80/380 ÷ 21.0%)</u>

*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에 한정하여 사용될 예정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제5조의3 신설, 2023. 12. 31.))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제5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현행 제도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9조)³⁾에 근거하여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⁴⁾, 해당 위원회는 교부금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 보통교부금 및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
- 2.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 3.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및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법 제8조에 따른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 5.법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
 - 나.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행정,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라. 그 밖에 교육행정,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 2명
-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⑧·⑨ (생략)

4)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3(2014.7.31.신설)에 따라 ‘국가시책특별교부금심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시행규칙 개정(2024. 11.13, 제4조의3 삭제 및, 제9조 신설)으로 ‘국가시책특별교부금심의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보통교부금 산정·교부·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포함함. 2025년 제1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발족(2025.2.)

이에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교부금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 심사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교부금위원회’)의 입안 방식과 관련하여,

교부금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다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관하여 심의·자문·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적 절차이기는 하나 그 의결내용이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함.

이러한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의 경우 하위법령에서 그 설치 근거를 둘 수 있고⁵⁾, 위원회의 기능이 하나의 부처에 한정되어 소관 부처장의 고유한 권한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총리령·부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⁶⁾⁷⁾. 다만,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5)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6) 법령입안기준(2024, 법제처) p.400

7) 참고로, 교부금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교부세위원회의’의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서 설치 근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1항및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3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의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등 해당 위원회의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되 법률에는 그 설치 근거 및 기능 등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나머지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⁸⁾.

개정안은 교부금위원회의 설치 근거,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 자격 및 임기,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교부금위원회의 성격 및 입법 사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심의사항 등 주요한 내용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교부금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 교부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는 지역현안특별교부금 및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포함하고 있고,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 과반 이상의 위원이 사전에 동의하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지책특별교부금의 교부시와 같이 지역현안특별교부금 및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의 교부시에도 교부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5.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법령입안기준(2024, 법제처) p.401

법제기준과 실제(2024, 국회 법제실) p.288

하는 한편 위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교부금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의 심의사항으로 새로이 규정하려는 지역현안특별교부금 및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은 지역의 현안 발생 시 시급성·특수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교부금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9).

<교부금위원회 심의사항 비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 2.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5조의3제2항제2호및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 2.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4.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 과반 이상의 위원이 사전에 동의하는 안건

다음으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과 달리 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별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감협의체 지명위원을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9)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시책사업으로 사업의 운영 방향과 수요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으나, 지역교육현안특별교부금은 지역의 필요성 및 수요 발생이 우선되고,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은 재해, 재난 발생 등에 따른 수요에 따라 시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특수성·효율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체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는 위원장 선출의 민주성, 위원구성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교부금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교부금 위원회는 교육부 고유업무인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서 위원장은 해당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¹⁰⁾.

<교부금위원회 위원구성 비교>

현 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 정 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 나.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지방공무원 (장학관을 포함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행정,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교육행정,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 2명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 나. 각 시·도교육청별 부교육감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지방공무원 (장학관을 포함한다) 1명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행정,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교육행정,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 1명

10) 참고로, 교부금위원회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교부세위원회의’의 경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교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명

다. 그 밖에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외 개정안은 위원구성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영하는 경우 부칙에 위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¹¹⁾).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시도교육청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위원회 법률규정) 교부금 산정·교부와 관련하여 심의를 지원하는 일종의 자문 기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도 규정이 가능함
- (국회통제) 현행 교부금법은 매년 보통·특별교부금의 산정·교부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제12조)하고 있으며,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교부금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가 가능함
- (위원장) 개정안은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된 위원회에서 특정 시·도교육청 소속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시·도간 교부금 산정·조정 등의 유·불리에 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음
- (특별교부금 심의) 개정안은 모든 특별교부금 항목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부장관이 지원항목·금액 등을 산정하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달리 시·도 교육감이 재난 등 긴급한 지역 수요에 근거해 신청하는 지역현안·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에 따라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가능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교부세위원회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중임을 고려할 때 현행유지가 바람직함

11) 법제기준과 실제(2024, 국회 법제실) p882

【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 ①지역현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해당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교부금위원회의 심의 없이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②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는 것은 시·도 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하고, ③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몫을 1인으로 감축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의적 운용 방지라는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배치됨

문 의 처

02)6788-518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개요 >

(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운영에 대한 투명성·효율성 강화

(연혁) 2025년 제1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발족 ('25.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신설(2014.7.31.)에 따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심의회를 운영, 보통교부금 산정·교부·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로 개편

(위원구성) 당연직위원 4인, 지방공무원 8인, 외부전문가 9인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2인 등 총 23인으로 구성

	분류	소속	성명	직위 / 전공
1	위원장	교육부	오석환	차관
2	내부위원 (당연직)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3		교육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
4		교육부	전진석	교육자치안전정책관
5	교육청	경상북도	권 * *	부교육감
6		전라남도	황 * *	부교육감
7		경기도	이 * *	기획조정실장
8		서울특별시	정 * *	행정국장
9		대전광역시	최 * *	기획예산과장
10		경상남도	서 * *	예산담당과장
11	단위학교	소담중학교	강 * *	교장
12		삼기중학교	김 * *	교장
13	외부 전문가	한양대	주 * *	경제학
14		연세대	하 * *	정책학
15		춘천교대	윤 * *	교육학
16		충북대	이 * *	교육학
17		성균관대	배 * *	교육학
18		건국대	장 * *	교육학
19		광운대	이 * *	행정학
20		성균관대	정 * *	정책학
21		조세재정연구원	강 * *	경제학
22	교육감협 추천	교육감협의회	박 * *	행정과장
23		숙명여대	송 * *	교육학

(개최현황) '25년 총 2회 (1차회의: 2025.2.27., 대면 / 2차회의: 2025.4.8.~11., 서면)

(심의안건)

- 1차: 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 2025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 2025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원계획 변경 / 2025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지원계획 변경 등 4건
- 2차: 2025년 보통교부금 이의신청

(자료: 교육부)